

무배당 투자의 정석 변액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투자의 정석 변액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7년 12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①투자의 정석 변액보험②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및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종신	만15세~70세	5년납/7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30년납	월납
거치형			일시납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이상으로 한다.

(2) 거치형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500만원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자동인출금액 포함)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자동인출금액 포함)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과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포함

(2) 거치형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자동인출금액 포함)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자동인출금액 포함)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과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포함

(3)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후, '1' 및 '2'에 따라 한도를 계산할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다. 「22. 투자실적연금전환에 관한 사항」에 의해 투자실적연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1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 보험의 적용이율(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이하 '적용이율'이라 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해당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여,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 선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해지공제를 하지 않는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연단위복리(연미만 단리)로 부리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제외, 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

한 이율로 한다.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제한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적립형의 경우 연간 기본보험료(월납 기본보험료의 12배)의 50%와 300만원 중 큰 금액이상이 되어야 하며, 거치형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20%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최소잔여적립금이라 한다.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합계(계약자적립금의 인출과 자동인출금액을 포함)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마. 평균분할투자기간 동안은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다.
- 바. 「22. 투자실적연금전환에 관한 사항」에 따라 투자실적연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다.

11.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이하 '자동인출서비스기간'이라 한다) 및 금액(이하 '자동인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자동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동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동인출서비스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 계약자가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동인출금액은 매월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인출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다. 다만, 자동인출서비스는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의 인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자동인출금액
적립형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
거치형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1.0% 이내

- 라. 자동인출금액은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에 포함하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마. 자동인출금액 최초 지급일은 「자동인출서비스 신청일 + 제5영업일」이후 계약자가 선택한 날로 한다.
- 바. 자동인출금액 매월 지급일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난 날을 말한다.
- 사. 자동인출금액은 매월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하고,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인출서비스를 종료한다.

- (1) 계약자가 자동인출서비스의 종료를 신청한 경우
- (2) 매월 자동인출금액의 지급 전 계약자적립금의 잔액이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최소잔여적립금과 자동인출금액의 합보다 작을 경우
- (3)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해당 자동인출금액의 지급 전 인출금액의 합계(계약자적립금의 인출과 자동인출금액을 포함)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해당 자동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경우.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자. '아'의 '(2)' 및 '(3)'에 따라 자동인출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다만, 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차. 자동인출금액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카. 평균분할투자기간 동안은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타. 「22. 투자실적연금전환에 관한 사항」에 의해 투자실적연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자동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없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중 회사가 정한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회 보험료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적용이율로 적립하며, 그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승낙일	

후 승낙된 경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용한 금액
----------	--	----------------------------------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적립형에 한함)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적용이율로 적용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까지 적용이율로 적용한 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월계약해당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적용한 금액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적용한 금액

(3)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납입일 + 제2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적용한 금액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이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5.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5년납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7년납	보험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이후
10년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공제액이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다' 및 '바' 에서 월계약해당일은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아. '다' 및 '바'에서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한다.

자. 평균분할투자기간 동안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23. 기타」의 '다'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11.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포함)한 경우 및 「20.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당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또는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이하 상기 네 가지를 합한 보수를 '특별계정운영보수'라 한다)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영보수를 인하여 그 시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영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으로 한다.

- ① 국내주식형: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하로 투자되며, 해당 자산의 ETF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과 유동성 자산에 직접투자 할 수 있다.
 - ② 글로벌채권형: 전세계(국내 포함)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하로 투자되며, 해당 자산의 ETF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과 유동성 자산에 직접투자 할 수 있다.
 - ③ 글로벌Dynamix형: 전세계 다양한 투자자산(주식, 하이일드채권, 원자재, 부동산, FX, 헷지펀드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포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10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④ 글로벌자산배분형: 펀드재산의 대부분을 전세계(국내 포함) 다양한 투자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관련 수익증권(ETF 포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100% 이하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목표 변동성내에서 투자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으로 운용된다.
 - ⑤ MMF형: 콜론(CALL LOAN),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증권어음, 수익증권, 단기채권, 기타 제예금 등 일정등급 이상 양질의 단기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단기위주의 국내 및 해외채권 및 채권형 수익증권(MMF, ETF 포함)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한다.
 - ⑥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국내 및 해외 고수익 채권(하이일드 채권)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국내 및 해외 채권, 해외 하이일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에 100%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다만, '채권 등'에의 투자는 미국 및 신흥국가를 포함한 전세계의 다양한 고수익 채권 포트폴리오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및 ETF 등을 위주로 한다.
 - ⑦ 글로벌컨슈머형: 국내 및 해외 주식,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국내 및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및 해외 수익증권 및 대출,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등'에의 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소비 관련 주식 또는 이와 관련한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및 ETF 등을 위주로 한다.
 - ⑧ 글로벌4차산업성장형: 국내 및 해외 주식,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국내 및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및 해외 수익증권 및 대출,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등'에의 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4차산업혁명 관련 주식 또는 4차산업혁명 관련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및 ETF 등을 위주로 한다.
- (2)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1)'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4)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2회 범위 내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택 가능한 펀드의 갯수는 최대 4개이며, 펀드별 투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1)'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하여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한 경우 펀드별 투입비율의 선택은 '(바)'의 '(1)'을 따른다.
-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라. 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

-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펀드로의 이전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3)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 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4) 평균분할투자기간 동안은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할 수 없다.

마.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신청 및 취소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별 투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펀드별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별 투입비율이 펀드자동재배분에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재배분 된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5)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은 신청할 수 없다.

바. 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신청 및 취소

- (1)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분할투자 대상 기본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계약자가 '나'의 펀드 중 선택한 하나의 펀드에 전액 투입한 후, 계약자가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기간 동안 '다'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분할 투입한다. 다만, 적립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평균분할투자 신청이 제한된다.
- (2) '(1)'에서 매월 분할 투입되는 금액은 매월 분할투입일 현재 평균분할투자대상 잔액을 평균분할투자 잔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3) '(1)'의 평균분할투자기간은 6개월, 12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 말하며, 매월 분할투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투입이 실행된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매년 4회 범위 내에서 평균분할투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분할투자기간 중 새로운 평균분할투자신청은 제한될 수 있다.
- (5)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 평균분할투자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취소시점의 평균분할투자 미실행 잔여금액을 '라'의 '(2)'를 준용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한다.
- (6) 펀드자동재배분을 신청한 경우 평균분할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 특별계정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 (1)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운용보수
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00%(매일 0.000821918%)
글로벌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70%(매일 0.000465753%)
글로벌 Dynamix 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600%(매일 0.001643836%)
글로벌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600%(매일 0.001643836%)
MMF 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00%(매일 0.000273973%)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00%(매일 0.000547945%)
글로벌컨슈머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00%(매일 0.001369863%)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00%(매일 0.001369863%)

- (2)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00%(매일 0.000273973%)
글로벌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00%(매일 0.000547945%)
글로벌 Dynamix 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00%(매일 0.001095890%)

글로벌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00%(매일 0.001095890%)
MMF 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0%(매일 0.000027397%)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00%(매일 0.000547945%)
글로벌컨슈머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00%(매일 0.000547945%)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00%(매일 0.000547945%)

(3)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수탁보수
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5%(매일 0.000041096%)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Dynamix 형	
글로벌자산배분형	
MMF 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글로벌컨슈머형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4)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7%(매일 0.000046575%)
글로벌채권형	
글로벌 Dynamix 형	
글로벌자산배분형	
MMF 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글로벌컨슈머형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5)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1)’ 내지 ‘(4)’에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아.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차.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③ ‘①’ 및 ‘②’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카.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타.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파.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기타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 이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2)’에 따라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에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자동인출서비스 포함)
- (3)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이체할 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0.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22. 투자실적연금전환에 관한 사항」에 의해 전환한 이후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21.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5조(보증준비금 산출) 및 [별표 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22. 투자실적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실적연금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1) 투자실적연금전환 가능 시점
 - ① 적립형: 계약일로부터 Min(보험료 납입기간, 12년)이후
 - ② 거치형: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 (2)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나. 연금형태의 선택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가'에 따라 투자실적연금전환을 신청할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① 기간확정형연금
- ② 균등분할형연금
- (2) '(1)'의 연금형태 중 기간확정형연금은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주기를, 균등분할형연금은 연금지급금액 및 연금지급주기를 정해야 한다.
 - ① 기간확정형연금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연단위 기간
 - 연금지급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② 균등분할형연금
 - 연금지급금액: 투자실적연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

연금지급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매회 지급한도	1.5%	5%	10%	20%

- 연금지급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다. 회사는 투자실적연금의 연금전환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신청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라. 균등분할형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일에 계약자적립금이 연금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이 소멸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다만, 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마. 보험수익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수령기간 중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변경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도래하는 최초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최소연금지급금액은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다.

바. 계약자가 연금 전환을 신청할 경우, 연금전환은 투자실적연금전환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외에 다른 연금전환은 신청할 수 없다.

23. 기타

가.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분기별로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적립형: 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Min(보험료 납입기간, 10년)
- (2)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다.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감액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를 감액한다. 다만, 평균분할투자기간 동안은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0%이내(다만, 거치형의 경우 95%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마.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관련법규의 준용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사.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와 기본보험료의 공제금액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자.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첨 제1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